

## 교육지원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보훈번호	특수임무 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교육지원 희망자	특수임무 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가구원	교육지원 희망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비고

가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인과 함께 등재된 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을 의미하나, 그 중 현역 군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table border="0"> <tr> <td>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td> <td>17. 폐업사실증명</td> </tr> <tr> <td>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td> <td>18. 소득금액증명</td> </tr> <tr> <td>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td> <td>19. 납세사실증명</td> </tr> <tr> <td>4. 장애인증명서</td> <td>20. 납세증명서</td> </tr> <tr> <td>5. 임야대장</td> <td>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td> </tr> <tr> <td>6. 토지대장</td> <td>22. 공무원연금내역서</td> </tr> <tr> <td>7. 토지등기사항증명서</td> <td>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td> </tr> <tr> <td>8. 개별공시지가확인서</td> <td>24.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td> </tr> <tr> <td>9. 건축물대장</td> <td>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td> </tr> <tr> <td>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td> <td>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td> </tr> <tr> <td>11. 주택가격확인서</td> <td>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td> </tr> <tr> <td>12. 선박원부</td> <td>28. 자동차등록증</td> </tr> <tr> <td>13. 자동차등록원부</td> <td>29. 자활근로자확인서</td> </tr> <tr> <td>14. 사업자등록증명</td> <td>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td> </tr> <tr> <td>15. 임대사업자등록증</td> <td>31. 차상위계층확인서</td> </tr> <tr> <td>16. 휴업사실증명</td> <td></td> </tr> </table>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7. 폐업사실증명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8. 소득금액증명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19. 납세사실증명	4. 장애인증명서	20. 납세증명서	5. 임야대장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6. 토지대장	22. 공무원연금내역서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4.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9. 건축물대장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주택가격확인서	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12. 선박원부	28. 자동차등록증	13. 자동차등록원부	29. 자활근로자확인서	14. 사업자등록증명	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15. 임대사업자등록증	31. 차상위계층확인서	16. 휴업사실증명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7. 폐업사실증명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8. 소득금액증명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19. 납세사실증명																																	
4. 장애인증명서	20. 납세증명서																																	
5. 임야대장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6. 토지대장	22. 공무원연금내역서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4.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9. 건축물대장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주택가격확인서	27.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12. 선박원부	28. 자동차등록증																																	
13. 자동차등록원부	29. 자활근로자확인서																																	
14. 사업자등록증명	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15. 임대사업자등록증	31. 차상위계층확인서																																	
16. 휴업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 요구	<p>[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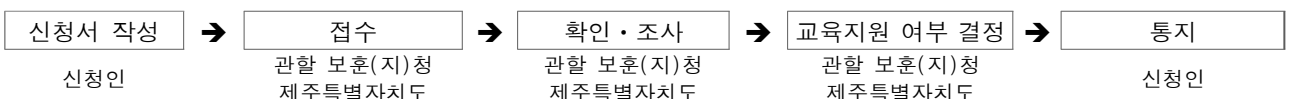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교육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제3항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